지평지성 건설부동산 뉴스레터

JIPYONG JISUNG CONSTRUCTION & REAL ESTATE NEWSLETTER

법무법인 지평지성 2013년 7월 제26호

■ 최신 법령 ■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

[법률 제11867호, 2013. 6. 4., 일부개정, 시행 2013. 6. 4]

1. 개정이유

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33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기업도시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, 기업도시,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 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경우 최소면적보다 줄여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, 원형지 개발을 허용 함으로써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, 공유수면 매립 완료 후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시 총사업비에 매립면허권 양수가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.

2. 주요 내용

- 가. 인근 기업도시·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경우 기업도시 최소 면적 요건의 완화(안 제6조제2항 단서)
 - 인근 기업도시·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업도시 최소면적을 1/2의 범위에서 줄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나. 개발이익 재투자대상의 범위 한정(안 제8조제2항 본문) 개발이익 재투자대상을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.
- 다. 원형지 개발을 허용(안 제11조제2항 제9호, 제12조제1항 제6호, 제16조 제3항 제2호, 제21조,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3조 제4호)

1

지평지성 건설부동산 뉴스레터

JIPYONG JISUNG CONSTRUCTION & REAL ESTATE NEWSLETTER

법무법인 지평지성 2013년 7월 제26호

원형지 개발을 허용하여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라.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·양수가격 기준을 마련(안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)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·양수가격 기준을 마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예방하고, 공유수면 매립완료 후 기업도시 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 총사업비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손실을 예방하였습니다.

3. 다운로드: 기업도시개발 특별법